

## 부록: 협회지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한 지침

지침 제7호

2024. 4. 17. 제정 (시행일 2024. 4. 17.)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협회지 간행에 관한 규칙 제5조 “원고의 수집과 심사”에 따른 협회지 논문 등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투고자 및 투고 수)** ① 협회지 논문 등의 투고자는 협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인 자(이하 회원으로 통칭한다)로 한다. 단, 회원과의 공동연구 및 초청 원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논문 등 투고는 1인당 1편으로 한다.

**제3조(심사 대상)** 심사대상 논문 등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, 또한 학위논문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
**제4조(기재사항)** 논문 등을 투고할 경우에는 투고자의 성명, 소속, 제목, 초록, 주제어를 국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원고 장수)** 투고되는 연구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이내, 투고되는 실무연구, 해외자료, 판례평석 등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장 이내를 각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6조(책임 소재)** 논문 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고,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.

**제7조(저작권)** 협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“대한공증인협회”에 있다.

**제8조(작성 요령)** 논문 등은 별지 1. “논문작성요령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논문 접수)** 투고된 논문이 협회지의 간행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반송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심사 방법)**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대상 논문 등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지정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공증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심사대상 논문 등은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야 한다.

③ 논문 심사 시 투고논문 등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.

**제11조(심사기준)**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논문체제와 내용의 창의성·적합성
2. 연구관점의 참신성
3. 연구결과의 명확성
4. 학문적 또는 실무적 기여도
5.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

**제12조(심사 결정)** ① 심사위원은 논문 등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결정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논문심사결정서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게재 가능
2. 수정 후 게재
3. 수정 후 재심사
4. 게재 불가

② 논문 등을 심사한 결과 각 심사위원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다수의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“수정 후 재심사”로 결정된 논문 등에 대하여 필자가 원고를 철회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“게재 불가”로 간주한다.

**제13조(비밀준수)**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, 논문투고자에게만 심사 결과를 통고한다.

**제14조(원고 등의 게재)** 제12조 제1항 각 호 중 “게재 가능”, “수정 후 게재” 및 “제12조 제3항에 따른 수정 후 재심사 결정 이후 재심사에 의해 게재”로 결정된 각 원고는 협회지에 게재한다.

**부 칙**(2024. 4. 17.)

이 지침은 2024. 4. 17.부터 시행한다.

## 별지 1.

## 논문 작성 요령

1. **투고원고(논문 등)**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한자 및 외래어를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다.

2. **본 협회의 투고원고**는 반드시 “아래아 한글2002”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3. **원고 체제** : 용지 A4, 글자 크기 10, 들여쓰기 2, 줄 간격 180, 장평 100, 자간 0.

4. **여백 주기** : 위 33, 아래 33, 왼쪽 33, 오른쪽 33, 머리말 12, 꼬리 말 12, 제본 0.

5. **원고 전체 제목** : 글꼴 중고딕, 글자 크기 15, 진하게, 정렬 방식 가운데.

6. **제출자 성명** : 글꼴 신명조, 글자 크기 11, 정렬 방식 오른쪽.

7. **원고의 목차 설정** :

1단계 : I, II, III, … (글꼴 신명조, 글자 크기 12. 진하게)

2단계 : 1, 2, 3, … (신명조, 글자 크기 10, 보통)

3단계 : 가, 나, 다, … (위와 같음)

4단계 : (1), (2), (3), … (위와 같음)

5단계 : (가), (나), (다), … (위와 같음)

본문 중의 단순한 나열 : ①, ②, ③, ④, …… (위와 같음)

8. **본문 중의 인용문**

(1) 직접 인용할 때에는 “ ”를 사용하고, 강조할 때에는 ‘ ’,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.

(2)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, 긴 경우(3행 이상)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. 본문의 인용은 글꼴 신명조, 글자 크기 9, 장평 100%, 자간 0%, 정렬 방식 양쪽 혼합, 줄간격 160, 왼쪽 여백 0, 오른쪽 여백 0으로 한다.

(3) 국내 판결은 선고 법원, 선고일, 판결 또는 결정,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[예: 대법원 1995. 1. 1. 선고 1994다1111판결],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 방법에 따른다. 이는 각주의 판결 표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.

## 9. 각주 표기

- (1) 각주의 표기는 각주(footnote)로 통일한다.
- (2)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, 각주의 내용은 본문 각 장의 하단에 제시해야 한다.
- (3) 각주는 글꼴 신명조, 글자 크기 9, 장평 100, 줄 간격 130, 양쪽 혼합, 왼쪽 여백 0, 내어쓰기 0, 왼쪽 자간 0으로 한다.

## 10. 각주 인용 문헌 표기 방법

- (1) 단행본 : 저자명, √ 단행본명, √ 출판사, √ 출판년도, √ 쪽수.
- (2) 정기간행물 : 저자명, √ 논문명, √ 간행물명, √ 출판년월, √ 쪽수.
- (3) 학위논문 : 저자명, √ 논문명, √ 학교명, √ 학위 중별, √ 출판년월, √ 쪽수.
- (4) 서양어(영어 등)·동양어(일본어 등) 문헌: 위 단행본, 정기간행물, 학위논문과 동일하고, 다만 쪽수는 영어 소문자 p.로 표기한다.
- (5) 기관지의 경우 :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.
- (6) 공저자의 경우는 “/”를 사용하여 표기한다. [예: 김갑돌/이을순/박명희].
- (7) 처음 인용된 다음의 표기는 “저자, 앞의 책(또는 앞의 논문), 쪽(또는 p.)”으로 표기한다.

## 11. 표와 그림

- (1)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와 제목을 붙이되 표 번호에는 < >, 그림 번호에는 [ ]의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에,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제시한다.  
예) <표 1> 전자공증의 만족도, [그림 1] 전자공증의 절차
- (2) 표 및 그림은 디스켓의 해당 부분에 저장시켜 제출한다. 필요한 경우는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.

## 12. 참고문헌

- (1) 참고문헌의 글자는 글꼴 중고딕, 글자 크기 12, 진하게, 정렬 방식 가운데.
- (2) 참고문헌의 목록 내용은 글꼴 신명조, 글자크기 10, 정렬 방식 양쪽혼합.
- (3) 참고문헌은 1. 국내문헌 가. 단행본, 나. 정기간행물, 다. 학위논문
- (3) 참고문헌은 2. 외국문헌 가. 단행본, 나. 정기간행물, 다. 학위논문 순서로 기재한다.

## 공증과신뢰 (2025 통권 제18호)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행일 | 2025년 12월 1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발행인 | 박종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발행처 | 대한공증인협회<br>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4, 4층 401호<br>(서초동, 서일빌딩)<br>전화 : (02)3477-5007<br>팩스 : (02)3476-5551<br>전자우편 : koreanotary@naver.com |
| 디자인 | 후디디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편집  | 전화 : (02)2269-5134<br>전자우편 : hood6@naver.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Notary and Public Faith (Vol. 18. 2025)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Published    | December 10.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Publisher    | PARK Jong So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Published by | Korean Notaries Associ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ddress      | (Seocho-dong, Seo-il Building)<br>#401, 104, Banpo-daero, Seocho-gu,<br>Seoul, Rep. of Korea<br>Tel: +82-2-3477-5007<br>Fax: +82-2-3476-5551<br>E-mail. koreanotary@naver.com |